



동해해양경찰서와 동해시 가족센터



업 무 협 약 서

동해해양경찰서·동해시 가족센터는 향후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필요한 지식, 정보, 자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업무협약은 체결기관 간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이익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둔다.

제2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.

제3조(협약내용) 본 협약에 의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국제성 범죄 예방 및 해양안전 홍보 협력
2. 상호 필요한 지식(통역·번역 포함), 정보, 자원 등 지원
3. 가족상담·진로상담·직업체험 등 교육·상담 프로그램 제공
4. 기타 건전한 해양문화 정착과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효력 및 유효기간)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.

③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,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호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비밀유지) 본 협약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 등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, 이는 협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같다.

제6조(협약서의 보관)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6월 4일



동해해양경찰서

서장 김환정



동해시 가족센터

센터장 우미강